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3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억제 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별표)

나.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정(안 제3조)

(1) 전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 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서
- 소·말 100m , 젖소·사슴·양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

- 지형도면 작성 고시 : 20,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5.23. ~ 6.1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
5.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구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젓소·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

제5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별 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 : 100m 이내 - 젖소·사슴·양 : 250m 이내 - 돼지·개·닭·오리 : 5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 “가축사육시설” 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미만 시설 포함
2. “직선거리” 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3조제2항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 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